

#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3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경우,  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  
송재혁, 이병도, 이영실,  
이정인, 조상호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일부개정(2017.3.21.)되어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의 정의에 “혼인”이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를 수정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연도별 시행계획에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임신”를 “혼인·임신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제5조”를 “제4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
2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
3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
4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이란 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시장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혼인·임신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<u>1.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</u></p> <p><u>2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</u></p> <p><u>3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</p>

<신 설>

사항

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